무배당엔젤상해보험

사 업 방 법 서

무배당엔젤상해보험

1. 보험종목의 명칭

무배당엔젤상해보험

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가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

<u>· </u>					
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가입나이			
3 년만기	2 년납				
5 년만기	2·3 년납				
7 년만기	3.5 년납, 전기납				
10 년만기	3.5.7 년납, 전기납	만 15 세~70 세			
15 년만기	3·5·7·10 년납				
20 년만기	3·5·7·10·15 년납				

나. 보험료 납입주기 : 월납, 3 개월납, 6 개월납, 연납

3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

-. 해당사항 없음

4. 배당에 관한 사항

-. 배당하지 않음

5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-. 특이사항 없음

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-. 해당사항 없음

7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
-.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제외하고 최대 11 개월분까지 가능하며, 3 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다.

8.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에 관한 사항

- 가.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(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할 수 있다.
- 나. 회사가 '가'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'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'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야 한다.

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
-.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+1%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.

10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-. 해당사항 없음

11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-. 해당사항 없음

12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가.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(이하 "보험계약대출"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.

나. 계약자는 '가'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,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.

13. 기타사항

- 가.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에 관한 사항
 - (1)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를 달리 산출한다.
 - (2)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, 전화,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,이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때에는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며,계약자는 변경 후 직업 또는 직무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 -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
 -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
 -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
 -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(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)를 계속적으 로 사용(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 우에 한함)하게 된 경우(다만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 차는 제외한다.)
 - (3)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한다.
 - (4) 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은 회사에서 정한 "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"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구 분	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			
	고위험	중위험	비위험	
위험등급	1, 2 급	3, 4 급	5 급	

나.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

- (1)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, 피보험자가 해당법인의 임원(대표이사 포함) 또는 종업원이며, 법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에 한하여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.
 - ①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경우

- ②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(대표이사 포함) 또는 종업원인 경우
- ③ 새로운 피보험자의 교체나이(이 계약의 체결시점 기준 새로운 피보험자의 가입나이)가 "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"에 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

다만,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의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 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- (2) (1)에 따라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이 승낙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, 회사는 승낙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한다.
- (3) (1)에 따라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(4) (1)에 따라 피보험자의 성별, 나이 또는 직업 및 직무를 달리하여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"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"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해약환급금을 정산하여 변경 전·후의 해약환급금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. 또한, 변경한 시점부터의 보험료는 변경 후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- (5) (1)에서 (4)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 3 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약관 제 4 조(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) 제 1 항에서 정 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변경을 할 수 없다.
- (6)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은 약관 제 17 조(보험계약의 성립), 제 25 조(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) 제 2 항에서 제 4 항, 제 13 조(계약 전 알릴 의무), 제 14 조(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), 제 15 조(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의 효과), 제 16 조(사기에 의한 계약)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다. 상품명칭 운용에 관한 사항

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 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.

라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

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-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범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.

마. 모집수수료에 관한 사항

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 시에는 계약체결비용의 99%를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로 한다.

바.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

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,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,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 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